

「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전기차 충전기(영구시설물)설치 동의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과 충전대기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,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충전시설 필요
- 환경자원화시설 주민편익시설 주차면 2개소에 한국전력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자 함.

※ 역할 및 업무분담 내역

기 관 명	역할 및 업무분담 내역
구미시	사업부지 제공(공유재산 유상허가)
한국전력공사	충전기 구축비용 100% 부담 및 운영

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 11조의3제2항 및 「구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 제7조 제5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예치 등의 조건으로 공유재산에

영구시설물*을 축조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, 본 안건을 상정합니다.

* 영구시설물 : 공유지에 고착되어 이동할 수 없는 시설(주차장, 수소충전소 등)

※ 근거 : 국유재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마목

3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- 1) 사 업 명 :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전기차 충전기(영구시설물) 설치사업
- 2) 기 간 : 2023. 9. ~ 12.
- 3) 위 치 : 산동읍 백현리 70-3번지 일원(주민편익시설)
- 4) 주요시설 : 급속 충전기 2기

나. 운영방법

- 1) 운영주체 : 한국전력공사
- 2) 운영기간 : 공유재산 사용허가 승인 이후 10년(10년 이내 1회 연장 가능)
- 3) 운영범위 :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,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
- 4) 운영방안 : 개방적 운영

※ 근거 :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 제11항

다. 전기충전기 설치계획

- 1) 설치장소 및 수량 : 설치시설 2개소 / 충전기 2대(급속 2)

라. 향후 추진계획

- 1) 2023. 9. :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전기차 충전기(영구시설물)
설치 동의
- 2) 2023. 9. :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운영관리 협약
- 3) 2023. 10. : 사업 착수
- 4) 2023. 12. : 사업 완료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,
「국유재산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,
「구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

5. 검토의견

○ 본 동의안은

- 구미시 소유 부지인 산동읍 백현리 70-3번지 일원에 영구시설물
(전기차 충전기) 축조를 위해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
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 3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
제출된 안으로써,

○ 검토 결과,

- 현재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편익시설의 하루평균 이용자가 약 100여명 정도('23.8월말 기준)임을 감안할 때 충전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충전 시간 및 인프라 부족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판단됨.